

이 사 회 규 정



이 사 회 규 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- ②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 유고시, 이사로 먼저 선임된 이사가,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6 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경우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은 회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가. 주주총회의 소집, 영업보고서의 승인, 재무제표의 승인
 - 나. 정관의 변경
 - 다. 자본의 감소
 - 라. 회사의 해산, 합병(피합병 포함)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마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
 - 바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사. 이사의 보수, 선임 및 해임

- 아.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자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차. 주식배당 결정,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, 주식의 소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카.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
- 타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, 위임사항 등
- 파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가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나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다. 공동대표의 결정
- 라.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마.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바.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
- 사. 공장 및 해외 현지법인(회사가 직접 출자한 회계상 연결 대상인 법인)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. 다만, 지점, 사무소, 출장소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
- 아.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자.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차. 준법지원인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 제·개정
- 카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
3.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

- 가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50 이상의 출자(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. 이하 같음)
- 나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50 이상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이 30% 미만이 되게 하는 출자지분의 처분
- 다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100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, 시설증설,

별도 공장의 신설

라.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

4. 회사의 경영,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양수도, 기술도입 및 이전, 기술제휴에 관한 사항
5.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부여
6. 사채의 발행. 다만,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여,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7. 준비금의 자본전입
8. 결손의 처분
9.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타인에 대한 보증행위. 다만, 그 기간연장 및 금융기관 변경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. [2018.12.13 개정]
 - 가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50 이상의 차입 및 여신한도 약정 체결
 - 나.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50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
 - 다.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
(단,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사 이행보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한다)
10.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의 설정. 다만, 차입조건에 따라 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.
11.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
 - 가. 국내 계열회사와의 단일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거래 (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제공)
 - 나. 국내 계열회사와의 분기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거래 (상품 용역 제공)
12. 이사에 관한 사항
 - 가.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나. 타회사(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)의 임원 겸임
13. 기 타
 - 가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- 나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
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14. 단 3호 및 9호의 이사회가 기승인한 건을 해당 호 승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% 미만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
2.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 (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자회사 및 관계회사는 제외)
3. 출자 및 투자 현황
4. 차입금 및 보증 현황
5. 주요 프로젝트의 영업 및 수행에 관한 사항
6. 직원의 연간 채용계획
7. 급여체계, 상여, 복리후생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주요 변경 사항
8.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
9. 투자회사의 경영,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관한 사항
10.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11. 손해배상 청구 등 중요한 소송의 제기, 확정
12. 벌금,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의 부과
13.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의 발생
1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0 조의 2 (위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[2018.12.13 신설]

제 10 조의 3 (긴급집행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사전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[2018.12.13 신설]

제 11 조 (관계인의 출석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[2023.09.21 신설]

제 12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기획담당임원 또는 기획담당부서장이 되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5 조 (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 (2018. 04. 10)

이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칙 (2018. 12. 13)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칙 (2023. 09. 21)

이 규정은 2023년 9월 2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